

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2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07. 5. 4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관계 법령에 맞게 인용법령과 용어를 정비함(안 제26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· 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7. 4. 6 ~ 4. 16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각 호외의 부분, 제2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, 제3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, 제31조제3항 및 제43조 각 호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각각 각 호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2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“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(이하 “용역사업 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”로, “용역사업 등이”를 “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가”로 한다.

제2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,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중 “구청장”을 각각 “자치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3제4항제1호중 “용역사업 등”을 “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”로 한다.

제2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200m 이내의 지역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,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

제2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제3항의 규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

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.

제명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”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문화재보호법”을 “「문화재보호법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 및 제24조의3제6항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각각
“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제24조의2(문화재수리용역 시공의 평가 등)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(이하 “용역사업 등”이라 한다)를 발주한 시장 또는 구청장(이하 “발주청”이라 한다)은 당해 용역사업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24조의3(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평가대상이 되는 용역사업 등의 선정 및 평가</p> <p>2. (생략)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 | 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- - - - 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 - - - - - - - - -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의2(문화재수리용역 시공의 평가 등) ①- - - - - - - - - - - - - <u>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</u>- - - - - - - - - - <u>자</u> <u>치구청장</u> - - - - - <u>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가</u> - 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 - -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의3(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 - - - - - - - - - - <u>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</u> - - - - 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26조의2(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도시계획구역중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200m 이내의 지역</p> <p>2. 도시계획구역중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 제3항의 규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건설공사가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.</p> | <p>제26조의2(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200m 이내의 지역</p> <p>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,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<신설></p> <p>제31조(전수장학생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③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2항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제33조(보조금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<u>구청장</u>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, 사용하도록 한다.</p> | <p>④제3항의 규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.</p> <p>제31조(전수장학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 - - - 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 - - - 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 - - - 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 - - - -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(보조금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 - - - - <u>자치구청장</u> - - - - 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42조(이의신청) ①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<u>구청장이</u>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| <p>제42조(이의신청) ① - - - - - - - - - - <u>자치구청장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3조(표창) 시장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| <p>제43조(표창) - - - - - <u>각 호의 어</u> <u>느 하나</u> - - - - - - - - - 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|

관계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36조 (용도지역의 지정)

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1. 도시지역 :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
가. 주거지역 :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상업지역 :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공업지역 :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라. 녹지지역 : 자연환경·농지 및 산림의 보호, 보건위생,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

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7년 5월 18일

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5월 4일 대전광역시장
2. 회 부 일 자 : 2007년 5월 7일
3. 상 정 일 자 :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(임사회)
제2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5. 18)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국장 정하운)

1. 제안이유

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관계 법령에 맞게 인용법령과 용어를 정비함(안 제26조의2).

III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한봉전)

○ 본 조례 안은

관계 법령인 「도시계획법」이 폐지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항을 분리 하는 등 일부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만, 관계 법령인 「도시계획법」이 폐지되고 「국토의 계

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의 대체 제정일이 2003년으로
현시점에서라도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다행스런 사항이
나, 현재까지는 조례의 적법성 및 조례 개정의 신속성 등을
저해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개정 시스템을
구축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
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IV. 토 론 요 지 : 생 략

V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VI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